

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"를 "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"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의2제1항제3호"를 "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의3제1항제3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 중 "2023년 7월 1일"을 "2026년 1월 1일"로, "6월 30일"을 "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-- ----- -----.
제2조(감염병의 종류) 「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, 질병관 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.	제2조(감염병의 종류) 「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의3제1항제3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삭 제	
2. <u>엠펙스(MPOX)</u>	<u><삭 제></u>
제3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2026년 1월 1일----- ----- ----- 12월 31일----- ----- -----.

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염병의 종류)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의 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삭제
2. 삭제

제3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